|  |  |  |
| --- | --- | --- |
| **상업건강보험개인소득세 시범시행정책을 전국범위로 확대하여 실시하는 것에 관한 통지**  재세[2017]39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단열시 재정청(국), 지방세무국, 보험감독관리국, 신강생산건설병단 재무국:  2017년 7월 1일부터 상업건강보험 개인소득세 시범정책을 전국범위로 확대하여 실시한다. 이에 유관문제를 다음과 같이 통지한다.  1. 정책내용에 관하여  개인이 규정에 부합하는 상업건강보험상품에 가입하는 지출에 대하여, 당해 연도(월) 과세소득액을 계산시 세전 공제를 허가하며, 공제한도는 2,400위안/년 (200위안/월)이다. 단위가 통일적으로 직원을 위해 규정에 부합하는 상업건강보험상품에 가입하는 지출에 대해서는 각각 직원의 개인급여보수로 계산하여 개인이 가입한 것으로 간주하고, 상술한 한도액을 기준으로 공제를 허가한다.  2. 400위안/년 (200위안/월) 공제한도는 개인소득세법에서 정한 공제비용 기준 이외의 공제이다.  2. 적용대상에 관하여  상업건강보험세수우대정책을 적용 받는 납세자는 급여 보수소득 및 연속적인 노무보수 소득을 취득하는 개인, 개체공상호(자영업) 경영소득 및 기업•사업단위 도급•임차경영소득을 취득한 개체공상호 업자, 개인독자기업 투자자, 동업기업 동업인과 하청임차경영자를 의미한다.  3. 상업건강보험상품의 규범과 조건에 관하여  규정에 부합하는 상업건강보험상품은 보험회사에서 개인 세수우대형 건강보험상품기본지침 및 시범약관(첨부파일 참조)를 참조하여 개발한 아래 조건에 부합하는 건강보험상품을 뜻한다.  3.1 건강보험상품은 보장기능이 있고 동시에 최저수익보장계좌를 개설하는 유니버설형 방식이며, 의료보험과 개인계좌 적립 등 2개항 책임을 포함한다. 피보험자 개인계좌는 그가 보험에 가입한 보험회사가 관리 및 유지를 책임진다.  3.2 피보험자는 만 16세 이상, 법정 퇴직연령에 도달하지 않은 납세자 계층이다.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과거 병력을 사유로 보험가입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되며 보험갱신을 보증한다.  3.3 의료보험 보장책임의 범위는 피보험자의료보험소재지 기본의료보험기금 지급 범위 내의 자가부담비용 및 일부 기본의료보험기금 지급범위 외의 비용을 포함하며, 비용의 정산범위, 비율과 한도액은 각 보험회사가구체적인 보험상품의 특징에 근거하여 자주적으로 확정한다.  3.4 동일 건강보험상품에 가입하는 피보험자의 상황별로 상이한 보험금액을 설정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보험금액 하한선은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가 규정한다.  3.5 건강보험상품은 '원금유지•박리(薄利)'의 원칙을 고수하며, 의료보험 부분에 대한 간이보험급부율(배상지출액이 보험료수입에서 점유하는 비율을 의미함)이 규정비율 미만인 경우, 보험회사가 실제 보험급부율과 규정비율의 차액을 피보험자의 개인계좌로 환불하여야 한다.  목표대상의 기존 보장항목과 보장수요에 따라 세가지 유형의 규정에 부합하는 건강보험상품이 있으며, 각각 적용되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1. 국비의료 또는 기본의료보험으로 정산하고 남은 의료비 개인부담분을 정산 받고자 하는 그룹, 2. 국비의료 또는 기본의료보험으로 정산하고 남은 개인부담분의 특정 거액의료비를 정산 받고자 하는 그룹,3. 국비의료 또는 기본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고, 의료비 개인부담분을 정산 받고자 하는 그룹.  상술한 조건에 부합하는 개인세수우대형 건강보험상품은 보험회사가<보험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 비준을 득해야 한다.  4. 세수 징수관리에 관하여  4.1 단위에서 통일적으로 조직하여 직원을 위해 가입하거나 또는 단위와 개인이 공동으로 부담하여 규정에 부합하는 상업건강보험상품에 가입하는 경우, 단위가 부담하는 부분은 실명으로 개인의 급여보수 명세목록에 산입하고 개인이 가입한 것으로 간주하여 상품가입 익월부터 200위안/월의 기준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월단위로 공제한다. 연간 보험료가 2,400위안을 초과하는 부분은 세전공제를 허가하지 않는다. 이후 연도에 보험을 갱신하는 경우, 상술한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개인이 스스로 보험해약 하는 경우, 이를 적시에 원천징수단위에 고지해야 한다. 보험회사는 개인의 보험해약 관련 정보를 적시에 세무기관에 전달해야 한다.  4.2 급여보수소득 또는 연속적인 노무보수소득을 취득한 개인이 자발적으로 규정에 부합하는 상업건강보험상품에 가입하는 경우, 원천징수단위에 적시에 보험증서증빙을 제출하여야 한다. 공제단위는 개인이 보험증서증빙을 제출한 익월부터 200위안/월 기준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월단위로 공제한다. 연간 보험료가 2,400위안을 초과하는 부분은 세전공제를 허가하지 않는다. 이후 연도에 보험을 갱신하는 경우, 상술한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개인이 스스로 보험해약 하는 경우, 이를 적시에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4.3 개체공상호 업주(자영업자),기업•사업단위 도급•임차 경영자, 개인독자기업 및 동업기업의 투자자가 조건에 부합되는 건강보험상품에 가입하는 경우 2,400위안/년의 기준금액 내에서 실비로 공제한다. 연간 보험료가 2,400위안을 초과하는 부분은 세전공제를 허가하지 않는다. 이후 연도에 보험을 갱신하는 경우, 상술한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5. 부처간 협업에 관하여  상업건강보험 개인소득세 세전공제정책은 여러 업무단계 및 부서와 연관되어 있는 바, 각 관계 부처는 긴밀히 협조하여 상업건강보험 개인소득세 정책을 확실하고 차질없이 실행하여야 한다.  5.1 재정, 세무, 보험감독관리부처는 상업건강보험 개인소득세 우대정책을 홍보하고 해설하며 서비스를 개선한다. 보험감독관리부처는 정보공유시스템을 구축하고, 상업건강보험과 관련된 세금 정보를 적시에 공유하여야 한다.  5.2 보험회사는 상업건강보험상품 판매 시,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개인에게 세금계산서와 보험증서 증빙을 발급하여야 하며, 상품명칭 및 납부금액 등 정보를 기재하여 개인소득세 세전 공제의 근거로 사용하도록 한다. 보험회사는 상업건강보험정보플랫폼과의 실시간 연결을 유지하고, 정보의 진실함과 정확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5.3 원천징수단위는 본 통지 및 세무기관의 유관요구에 따라, 상업건강보험 개인소득세 세전 공제정책을 성실하게 차질없이 실행하여야 한다.  5.4 보험회사 또는 상업건강보험정보플랫폼은 세무기관에 개인이 상업건강보험을 가입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세무기관과 협력하여 세수징수관리업무를 수행한다.  6. 실시시간에 관하여  본 통지는 2017년 7월 1일부터 집행한다. 2016년 1월 1일부터 상업건강보험 개인소득세 정책 시범시행을 전개한 지역은 2017년 7월 1일부터 계속하여 본 통지에 규정된 정책을 기준으로 집행한다.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의 상업건강보험 개인소득세 정책 시범시행 업무 전개에 관한 통지>(재세[2015〕56호),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의 상업건강보험 개인소득세 정책 시범시행 실시에 관한 통지>(재세[2015〕126호)를 동시에 폐지한다.  첨부: 1. 개인 세수우대형 건강보험상품 기본지침  2. 개인세수우대형 건강보험 (유니버설) A형 시범약관  3. 개인 세수우대형 건강보험 (유니버설) B형 시범약관  4. 개인 세수우대형 건강보험 (유니버설) C형 시범약관  재정부  세무총국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2017년 4월 28일  첨부 파일 다운로드:  첨부1: 개인 세수우대형 건강보험상품 기본지침  <http://szs.mof.gov.cn/zhengwuxinxi/zhengcefabu/201705/P020170502623447302167.doc>  첨부2: 개인 세수우대형 건강보험 (유니버설) A형  <http://szs.mof.gov.cn/zhengwuxinxi/zhengcefabu/201705/P020170502623447569923.doc>  첨부3: 개인 세수우대형 건강보험 (유니버설) B형  <http://szs.mof.gov.cn/zhengwuxinxi/zhengcefabu/201705/P020170502623447817713.doc>  첨부4: 개인 세수우대형 건강보험 (유니버설) C형  <http://szs.mof.gov.cn/zhengwuxinxi/zhengcefabu/201705/P020170502623448087520.doc> |  | **关于将商业健康保险个人所得税试点政策推广到全国范围实施的通知**  财税〔2017〕39号  各省、自治区、直辖市、计划单列市财政厅（局）、地方税务局、保监局，新疆生产建设兵团财务局：  　　自2017年7月1日起，将商业健康保险个人所得税试点政策推广到全国范围实施。现将有关问题通知如下：  　　一、关于政策内容  　　对个人购买符合规定的商业健康保险产品的支出，允许在当年（月）计算应纳税所得额时予以税前扣除，扣除限额为2400元/年（200元/月）。单位统一为员工购买符合规定的商业健康保险产品的支出，应分别计入员工个人工资薪金，视同个人购买，按上述限额予以扣除。  　　2400元/年（200元/月）的限额扣除为个人所得税法规定减除费用标准之外的扣除。  　　二、关于适用对象  　　适用商业健康保险税收优惠政策的纳税人，是指取得工资薪金所得、连续性劳务报酬所得的个人，以及取得个体工商户生产经营所得、对企事业单位的承包承租经营所得的个体工商户业主、个人独资企业投资者、合伙企业合伙人和承包承租经营者。  　　三、关于商业健康保险产品的规范和条件  　　符合规定的商业健康保险产品，是指保险公司参照个人税收优惠型健康保险产品指引框架及示范条款（见附件）开发的、符合下列条件的健康保险产品：  　　（一）健康保险产品采取具有保障功能并设立有最低保证收益账户的万能险方式，包含医疗保险和个人账户积累两项责任。被保险人个人账户由其所投保的保险公司负责管理维护。  　　（二）被保险人为16周岁以上、未满法定退休年龄的纳税人群。保险公司不得因被保险人既往病史拒保，并保证续保。  　　（三）医疗保险保障责任范围包括被保险人医保所在地基本医疗保险基金支付范围内的自付费用及部分基本医疗保险基金支付范围外的费用，费用的报销范围、比例和额度由各保险公司根据具体产品特点自行确定。  　　（四）同一款健康保险产品，可依据被保险人的不同情况，设置不同的保险金额，具体保险金额下限由保监会规定。  　　（五）健康保险产品坚持“保本微利”原则，对医疗保险部分的简单赔付率低于规定比例的，保险公司要将实际赔付率与规定比例之间的差额部分返还到被保险人的个人账户。  　　根据目标人群已有保障项目和保障需求的不同，符合规定的健康保险产品共有三类，分别适用于：1.对公费医疗或基本医疗保险报销后个人负担的医疗费用有报销意愿的人群；2.对公费医疗或基本医疗保险报销后个人负担的特定大额医疗费用有报销意愿的人群；3.未参加公费医疗或基本医疗保险，对个人负担的医疗费用有报销意愿的人群。  　　符合上述条件的个人税收优惠型健康保险产品，保险公司应按《保险法》规定程序上报保监会审批。  　　四、关于税收征管  （一）单位统一组织为员工购买或者单位和个人共同负担购买符合规定的商业健康保险产品，单位负担部分应当实名计入个人工资薪金明细清单，视同个人购买，并自购买产品次月起，在不超过200元/月的标准内按月扣除。一年内保费金额超过2400元的部分，不得税前扣除。以后年度续保时，按上述规定执行。个人自行退保时，应及时告知扣缴单位。个人相关退保信息保险公司应及时传递给税务机关。  　　（二）取得工资薪金所得或连续性劳务报酬所得的个人，自行购买符合规定的商业健康保险产品的，应当及时向代扣代缴单位提供保单凭证。扣缴单位自个人提交保单凭证的次月起，在不超过200元/月的标准内按月扣除。一年内保费金额超过2400元的部分，不得税前扣除。以后年度续保时，按上述规定执行。个人自行退保时，应及时告知扣缴义务人。  　　（三）个体工商户业主、企事业单位承包承租经营者、个人独资和合伙企业投资者自行购买符合条件的商业健康保险产品的，在不超过2400元/年的标准内据实扣除。一年内保费金额超过2400元的部分，不得税前扣除。以后年度续保时，按上述规定执行。  　　五、关于部门协作  　　商业健康保险个人所得税税前扣除政策涉及环节和部门多，各相关部门应密切配合，切实落实好商业健康保险个人所得税政策。  　　（一）财政、税务、保监部门要做好商业健康保险个人所得税优惠政策宣传解释，优化服务。税务、保监部门应建立信息共享机制，及时共享商业健康保险涉税信息。  　　（二）保险公司在销售商业健康保险产品时，要为购买健康保险的个人开具发票和保单凭证，载明产品名称及缴费金额等信息，作为个人税前扣除的凭据。保险公司要与商业健康保险信息平台保持实时对接，保证信息真实准确。  　　（三）扣缴单位应按照本通知及税务机关有关要求，认真落实商业健康保险个人所得税前扣除政策。  　　（四）保险公司或商业健康保险信息平台应向税务机关提供个人购买商业健康保险的相关信息，并配合税务机关做好相关税收征管工作。  　　六、关于实施时间  　　本通知自2017年7月1日起执行。自2016年1月1日起开展商业健康保险个人所得税政策试点的地区，自2017年7月1日起继续按本通知规定的政策执行。《财政部 国家税务总局 保监会关于开展商业健康保险个人所得税政策试点工作的通知》（财税〔2015〕56号）、《财政部 国家税务总局 保监会关于实施商业健康保险个人所得税政策试点的通知》(财税〔2015〕126号)同时废止。  　　附件：1.个人税收优惠型健康保险产品指引框架  　　　　　2.个人税收优惠型健康保险（万能型）A款示范条款  　　　　　3.个人税收优惠型健康保险（万能型）B款示范条款  　　　　　4.个人税收优惠型健康保险（万能型）C款示范条款  　　　财政部  税务总局  保监会  　　　　　　　　　　　2017年4月28日  附件下载:  附件1：个人税收优惠型健康保险产品指引框架.doc  <http://szs.mof.gov.cn/zhengwuxinxi/zhengcefabu/201705/P020170502623447302167.doc>  附件2：个人税收优惠型健康保险（万能型）A款.doc  <http://szs.mof.gov.cn/zhengwuxinxi/zhengcefabu/201705/P020170502623447569923.doc>  附件3：个人税收优惠型健康保险（万能型）B款.doc  <http://szs.mof.gov.cn/zhengwuxinxi/zhengcefabu/201705/P020170502623447817713.doc>  附件4：个人税收优惠型健康保险（万能型）C款.doc  <http://szs.mof.gov.cn/zhengwuxinxi/zhengcefabu/201705/P020170502623448087520.doc> |